

# 요르단(Jordan)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78년, 2001년, 2010년
- 현행법 : 2014년(사회보장)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 ※ 자산 및 소득 조사 급여가 특정 노인, 장애인, 유족에게 가족수당 하에 지급됨

##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민간부문 근로자 및 특별제도에 보장받지 않는 공공부문 근로자, 자영자, 외교 공관 또는 요르단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로하는 요르단 국민
- 임의가입 가능
- 적용제외 : 임시근로자
- 특별제도 : 공무원 및 군인

## 4 재원조달

- 가입자 : 총 월 가입소득의 6.5%; 임의 가입자는 17.5%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국가 월 최저임금임
  - 국가 월 최저임금은 국민의 경우 220 디나르(dinars), 외국인의 경우 150디나르(dinars)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3,000 디나르(dinars)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및 전년도 법정 평균 가입임금에 근거하여 조정
- 자영자 : 총 월 가입소득의 17.5%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국가 월 최저임금임
  - 국가 월 최저임금은 국민의 경우 220 디나르(dinars), 외국인의 경우 150디나르(dinars)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3,000 디나르(dinars)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및 전년도 법정 평균 가입임금에 근거하여 조정
- 사용자 : 총 월 가입임금지급액의 11%. 위험 직업 근로자의 사용자는 1% 추가 납부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국가 월 최저임금임
  - 국가 월 최저임금은 국민의 경우 220 디나르(dinars), 외국인의 경우 150디나르(dinars)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3,000 디나르(dinars)

- 보험료 계산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및 전년도 법정 평균 가입임금에 근거하여 조정

○ 정부 : 모든 적자 재정지원; 사용자로서 납부함

##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최소 84개월의 납부 가입기간을 포함한 최소 18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납부 하였거나 구매된)을 가진 60세 남성 또는 55세 여성
  - 가입기간은 특정 조건 하에서 소급적으로 구매될 수 있음
  - 일반 퇴직연령 도달 시점에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진 가입자는 65세(남성) 또는 60세(여성)까지 노령연금 요건 충족 또는 금액 상승을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 가능
  - 피부양자 보조금 : 피부양 부인; 장애인 피부양 남편; 23세 이하 또는 장애인 아들; 미혼, 실업자, 피부양 딸; 및 피부양 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 조기연금 : 최소 252개월(남성) 또는 228개월(여성)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진 50세인 자; 최소 300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진 45세인 자; 최소 216개월(남성) 또는 180개월(여성)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지고 지난 10년간 위험한 직업에 근로하며 최소 60개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진 45세인 자. 조기연금은 2014년 3월 1일자 가입자의 연령, 성별, 보험료 납부횟수에 근거하여 50세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특정 다른 그룹에게도 지급
  - 연금 보조금 : 노령연금에 보조로 지급
  - 노령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노령청산금 : 노령연금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60세 남성 또는 55세 여성에게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 : 직업과 무관한 장애로 인해 평소 직업에 대한 완전한 근로능력 상실로 판정 되어야 하며, 최소 24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는 최소 60개월의 가입기간을 갖고, 근로 중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부분장애 : 가입자가 직업과 무관한 장애로 인해 부분적인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된다면, 감액 연금 지급
  - 상시간병수당 : 가입자가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시간병을 필요로 한다면 지급
  - 연금 보조금 : 장애연금에 보조로 지급
  - 중앙의료위원회와 의료심사위원회가 장애정도를 판정함
  - 장애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장애청산금 : 직업과 무관한 장애로 인해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어야 하며 장애연금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사망자가 노령 혹은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종이였거나 지급받을 예정이었거나,

사망 시 보험적용 근로 중이었으며 연속 6개월의 가입기간 포함 최소 24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을 가졌을 시 지급

-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 수입이 없는 장애인 홀아비; 23세 이하의 아들(장애인의 경우 제한 없음); 실업, 미혼, 과부, 또는 이혼의 상태인 피부양 딸; 18세 미만의 피부양 형제; 피부양 자매; 및 부모
- 미망인, 딸, 또는 자매에 대한 연금은 (재)혼인 시 중지되지만 이후에 미망인이 되거나 이혼했을 시 재개됨
- 유족보조금 : 유족연금에 보조로 지급
- 유족연금은 해외지급이 가능함
- 유족청산금 : 사망 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망자의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
- 장제비 : 가입자 사망 시 지급

##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급여

- 노령연금 : 월 연금액은 <(가입자의 1,500 디나르(dinars) 까지의 월 평균소득의 2.5% + 1,500 디나르(dinars)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의 2%) × 가입자 보험료 납부기간 월 수 ÷ 12>
- 월 평균소득은 가입자 지난 36개월간의 소득에 근거함
- 피부양보조금 : 첫 번째 피부양자에 대해 노령연금의 12%(최소 10 디나르(dinars) 최대 100 디나르(dinars)) + 두, 세 번째 피부양자에게는 각각 6%(각각에게 최소 10 디나르(dinars) 최대 25 디나르(dinars))
- 조기연금 : 최근 60개월간 납부 보험료 및 청구시점 기준 연령에 따라 법에 규정된 대로 비례적으로 감액
- 연금 보조금 : 월 40 디나르(dinars) 지급; 가입자 나이가 일반 퇴직연령보다 낮다면 월 20 디나르(dinars) 지급
- 급여조정 : 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는 법정 평균 가입임금의 연간 상승률 중 더 적은 것에 근거하여 매년 5월에 조정
- 조기연금은 수급자가 일반 퇴직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급여조정에 적용받지 않음
- 노령청산금 : 가입자 연평균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가입기간 1년마다 지급; 가입기간 10~18년에 대해서는 연평균임금의 12%; 가입기간 18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마다 연평균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 장애급여

- 장애연금 : 월 연금액은 <가입자의 1,500 디나르(dinars) 까지의 월 평균소득의 50% + 1,500 디나르(dinars)을 초과하는 월 평균소득의 30%>
- 월 평균소득은 가입자 지난 36개월간의 소득에 근거함

- 가입자가 60~119개월까지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납부기간 1년당 0.5%씩 연금액이 증액됨; 최소 120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기간 1년당 1%씩 증액함
- 부분장애 : 완전장애연금의 75% 지급
- 장애연금 상한제한은 없음
- 상시간호수당 : 장애연금의 25% 지급
- 연금보조금 : 월 40 디나르(dinars) 지급
- 급여조정 :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는 법정평균가입임금의 연간 상승률 중 더 적은 것에 근거하여 연금은 매년 5월에 조정
- 장애청산금 : 가입자가 최소 2년의 보험료 가입기간이 있다면, <장애 발생 이전 2년간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5% × 24>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가입자가 2년 미만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 중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5% × 납부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 마지막 년도의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50% 지급
  - 연금은 사망자가 60~119개월까지의 가입기간이 있었다면 납부기간 1년당 0.5%씩 연금액이 증액됨; 최소 120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기간 1년당 1%씩 증액함.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이 1명 이상이라면, 연금은 법에 따라 나뉘짐
  - 연금보조금 : 월 40 디나르(dinars) 지급
  - 급여조정 :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는 법정 평균 가입임금의 연간 상승률 중 더 적은 것에 근거하여 연금은 매년 5월에 조정
- 유족청산금 : 사망자가 최소 2년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었다면, <사망 전 2년간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15% × 24>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 사망자가 2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졌다면, <전체 납부기간 중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15% × 납부기간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장제비 : 500 디나르(dinar)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보장공단(Social Security Corporation)
  - 제도 운영, 보험료 징수
  - <https://www.ssc.gov.jo>

<2018년 ISSA 자료>